

COMPLIANCE

ISSUE PAPER

CHECK

유성규

성공회대 겸임교수, 공인노무사



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에 대해

● 들어가며

지난 11월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여러 노동자들이 희생되었다. 발주처인 동서발전으로부터 철거 작업을 도급받은 업체는 이를 다시 하청업체에 재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. 이 사건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.

고용노동부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, 전체 산재사고 사망노동자 589명 중에서 47.7%인 281명이 하청노동자였다. 50인 이상 제조업 및 기타 업종과 50억 원 이상 건설업의 산재사고 사망노동자 250명 중에서 71.6%인 179명이 하청노동자였다.

이에, 올해 9월 15일에 발표된 ‘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’에서는 도급인의 책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.



원·하청 구조는 산업재해를 야기하는 다양한 구조적 취약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.

특히 건설업이나 사내하청과 같이 도급인의 사업장 공간 내에서 하청노동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원·하청 구조의 경우, 그 구조적 취약성과 위험성은 일반적으로 더 커지게 된다.

이와 관련해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, 이번 호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.

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

도급인은 관계수급인¹ 노동자가 도급인의 사업장²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노동자와 관계수급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.

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, 작업의 중지,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,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 사용에 관한 협의·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, 그리고 안전인증대상기계 및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등이다.

●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

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노동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, 자신의 노동자와 관계수급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를



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노동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.

●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

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노동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,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래의 조치들을 이행하여야 하며,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노동자 및 관계수급인 노동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.

첫째,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해야 한다. 둘째,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해야 한다. 셋째, 관계수급인이 노동자에게 하는 ‘정기 안전보건교육’, ‘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안전보건교육’, ‘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

① 「산업안전보건법」상 ‘관계수급인’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.

② 「산업안전보건법」상 ‘도급인의 사업장’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하는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·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.



도급인은 위험 작업의 안전정보를 제공하고, 법 위반 시 시정조치를 하며, 건설공사에서는 강화된 안전 의무를 지켜야 한다.

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안전보건교육'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을 해야 한다. 넷째, 관계수급인이 노동자에게 하는 '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안전보건교육'의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 다섯째, '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', '작업 장소에서 화재·폭발, 토사·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'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.

여섯째,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,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의 이용에 협조해야 한다. 일곱째,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·내용,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. 여덟째, 상기 사항(일곱째 사항)의 확인 결과,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해 화재·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,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·내용 등을 조정해야 한다.

●●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

▲폭발성·발화성·인화성·독성 등의 유해성·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·사용·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·증류탑·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·분해·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▲상기 작업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▲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, 수급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.

이 경우,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도급인이 상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수급인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●●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

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노동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,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노동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,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.

또한, 도급인은 앞서 살펴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, 수급인 또는 수급인 노동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도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.



●●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

「산업안전보건법」은 건설공사도급인³에게 앞서 살펴본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 외에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정하고 있다. 건설공사도급인에게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69조(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), 제70조(건설공사기간의 연장), 제71조(설계변경의 요청), 제72조(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), 제73조(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), 제75조(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·운영에 관한 특례), 제76조(기계·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) 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.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이번 호에서는 이를 모두 살펴보기 어려우므로, 자세한 내용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을 살펴보기 바란다.☞

3 「산업안전보건법」상 '건설공사도급인'이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·관리하는 자를 말한다.